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의 필요충족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수준의 개발”로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다양한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에드워드 바비엘(1989)은 자연환경의 질과 그로부터의 편익을 유지하며 경제개발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의 개발, 데이비드 피얼스(1990)은 자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일인당 복지가 미래에도 감소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모라티(1993)는 지속가능성의 3요소로서 ① 환경파괴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② 미래세대와 현세대간의 복지수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③ 세대내에서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이 위원회가 시작단계에서 환경문제로 한정했던 논의가 환경은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다른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어 발전문제를 함께 고려하게 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속가능발전개념에 대한 엇갈린 논쟁은 '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 이후에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 개념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면죄부 논리에 불가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공식수렴되어 최근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심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구의 파멸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일 것이다.

1992년 12월 제47차 유엔총회에서는 의제21 제38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제사회이사회(ECOSOC)산하에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21의 이행사항을 점검, 평가하고 특히 선진국가의 국제기구의 ODA지원목표(GNP 0.7%)등 개도국에의 재정 및 기술이전 이행사항을 점검토록하고 1993년 이후 해마다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제21이 수립되어 유엔에 제출한 것은 1996년 10월이었다. 유엔의 권고사항보다 한해 늦은 것이다. 우리정부는 국가의제21 수립 이전인 93년도부터 해마다 국가보고서를 UNCSD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99년도 보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국가의제21의 이행에 대한 국무회의는 한차례도 열린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는 '93~'95년 사이 그리고 '99.5~3년간 유엔지속발전위원회의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다. 어떤 이의 지적대로 우리정부는 의제21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행에 주력하기 보다는 대외적인 자리매김에 치중한 흔적이 역력하다. 해마다 이 기구에 제출해오고 있는 국가보고서의 부실함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각 부처가 유엔에서 보내온 지침에 따라 무성의하게 작성한 문건에 의거 환경부가 취합하여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UNCSD의 이사국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고도 남는다는 평가이다.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도출에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것은 지난 6월5일 세계환경의날 기념식에서 김대중대통령이 대통령 직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하고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사전조율과 상호협력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9월22일 33명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출범을 공포하였다.

33명의 위원은 12개 부처의 장관(재정경제, 외교통상, 행정자치, 과학기술, 문화관광, 농림, 산업자원, 환경, 건설교통, 해양수산, 기획예산, 국무조정), 20명(여성3명)의 민간전문가들 및 시민단체대표와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위원회 간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위원회 산하에는 6개의 분과위원회(국토보전, 수자원, 생태보전, 에너지대책, 환경과 산업, 국제 및 지역 협력)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에는 위촉위원(본 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을 포함 실무위원(전문가, 부처의 파견공무원)등 15명 내외로 되어 있다. 역시 여성의 참여율은 극히 미미하다. 과연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PCSD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각 지자체들이 <지방의제21>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권위적인 관료사회에 의제21이 강조하고 있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PCSD의 과제수행을 통해 적어도 환경관련 부처에서만 고려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개념이 광범위하게 개발부처에서도 정책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중심개념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1992년 9월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세계 최초로 구성한 비올빈에 이어 벨기에는 1993년 10월에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이나 수상 직속으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기능을 조례에 의해 부여하고 서울시의 모든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심의하게 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앞으로 여타 지방자치체에도 지방CSD의 구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오늘의 환경문제의 화두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며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기관 설치 및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국제적으로는 크고 작은 회의들을 빈번히 개최하고 수많은 협약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이 악화일로에 케도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97년도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의 지구환경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21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같은 해 6월에 개최된 리우+5인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의 여성환경발전기구(WEDO)회원들이 외친 구호가 바로 <실천-action>이었다. 의제21의 실패의 원인을 다름 아닌 실천이 없는데서 생긴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누구나가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구시민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실천을 위한 합의도출이 어려운 것은 국제정치, 경제, 사회구조 및 체제가 남북간의 이해대립과 각 국가간의 이해대립의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현실이 지구의 지속가능성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III. 의제 21